

'17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(한국공항공사)

I 한국공항공사 대학생 지원

1. 추진목적

- 한국공항공사의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
- 소음피해 지역의 저소득층 성적 우수 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내용

- 지원규모: 350백만 원(100만원 ×175명 × 2회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* 전공대학, 대학원대학, 방송통신대학, 원격대학, 사이버대학, 기능대학은 제외
 - * '17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자
- 선발자격: 소음대책지역(양천·구로·부천·김포·계양 일부지역) 거주 학생
 - *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포털(www.airportnoise.kr)에서 확인 가능
 - * 계속장학생 심사 시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 확인, 미거주 시 계속장학생 탈락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 - * 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
 - *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
- 소득기준: 소득구간(분위) 2구간(분위) 이내로 확인되는 자
 - * 소득분위의 경우, '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가 있는 자에 한함
- 지원인원: 175명
 - * 지역별 선발인원은 소음대책지역의 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선발

- 지원내용: 학기당 1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)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17년 1학기부터 '17년 2학기까지 지원)
- 평가기준
 - 최근 소음대책지역 거주기간(100)
 - 거주기간 배점기준

거주기간	10년 이상	10년 미만 5년 이상	5년 미만
점수	100	70	40

- * 최근 거주기간은 본인(학생)의 현재 주민등록주소 상 거주지의 거주기간 (단, 현거주지 전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일 경우에만 합산하여 계산)
- * 동점자 처리기준: 거주기간 > 소득분위 > 연장자
- 필수 제출서류: 주민등록초본(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제출)
 - * 필수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
 - *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(현재 거주여부 확인을 위함)

II 공통 선발 기준

1. 장학생 심사

- 장학생 심사
 - 등록금/생활비 지원 유형 구분 없이 1학기 1개 유형만 수혜 가능
 - 신규장학생 선발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(삼성 포함) 계속장학생은 제외
- 소득분위 산정: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분위 적용
 - ※ '17년 1학기 소득분위가 있는 자에 한함
- 차순위자 선발
 - 최종 선발된 학생 중 학적변동,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하면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

2. 장학금 지급

-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유형: 장학금 정액 지원
- 장학금 지급 방식
 -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,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
3. 사후 관리

- 장학금 반환
 -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 -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
 - 장학생의 탈세 및 차명계좌 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
 - 장학생 자격상실,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
 -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(성적 및 이수학점,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 등)에 미충족될 경우
 -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
 - 군입대, 질병, 출산, 어학연수,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, 자퇴, 타 대학 편입,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
 -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
 - ※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
 - 반환대상 금액
 -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
 -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기준	반환 금액 산정(예)
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	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	833,333원 ※ 1,000,000원 × 5/6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	666,666원 ※ 1,000,000원 × 2/3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	500,000원 ※ 1,000,000원 × 1/2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	반환하지 아니함	반환금 없음

4. 장학생 선발 일정

업무내용	일정
장학금 신청 접수	'17. 4. 24.(월) ~ 5. 10.(수) 18시까지
장학금 심사 진행	'17. 5. 11.(목) ~ 6. 9.(금)
장학생 선정 및 지급	'17. 6월 중

*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,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